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	----

제출연월일 : 2011.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분할발주와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명시·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 나. 지역내 생산제품·장비·인력의 사용 권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른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던 조항삭제(안 제3조제5항 삭제)
- 나.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등 참여비율 권장문구 명시 (안 제4조의3 신설)
- 라.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인력의 우선사용 권장내용 명시(안 제4조의4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 협의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2011. 4. 12 ~ 2011.5. 2(21일간) 실시, 제출된 의견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0퍼센트. 단,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장비·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군의 책무) ① ~ ④ (생략)</p> <p>⑤ <u>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3조(군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신 설>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
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
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
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의 공동도급 비율을 40퍼센
트. 단, 군수가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
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
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
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

<신 설>

의 확대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장비·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1.22]]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제1항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10.12.30)

제3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 제1호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다” 및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 1)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 2)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3)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